〈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40000

석촌 칼국수 보리밥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0.00. peopleofmarket@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0.00.

석촌칼국수보리밥 정보공개서

석촌칼국수보리밥본점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석촌칼국수보리밥본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 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 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 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 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 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9, 1층(석촌동)

Tel: 1533-166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Tel : 1533-166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 '법 령자료 '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목 차

I.	가	맷녖	킽부	.의	잌	바	혀	화
	•	\mathbf{c}		_		_	_	$\overline{}$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5 5 6 6
п	. 가맹본부의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사업 현황	
	1. 석촌칼국수보리밥을 시작한 날	·· 8 ·· 8 ·· 9 ·· 9 ·· 9 10 10
Ш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12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6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1 22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_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26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31
9. 광고 및 판촉 활동····································	33
10. 응답미글 모오에 된던 시앙 ···································	34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38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39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WM, 교육·문단에 대한 결정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40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40
3. 교육·훈련의 주체 ···································	40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4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41
2.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41
3.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41
별첨[1] 물품의 상세한 내역······	42
별첨[2] 가맹점 관리표	46
별첨[3]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 ·······	47
별첨[4] 가맹금 예치신청서	······ 48
별점[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9
별첨[6]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별첨[7] 석촌칼국수보리밥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가맹점사업자 용/ 가맹본부 용	≩) ··· 51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석촌칼국수보리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9, 1층(석촌동)					
석촌칼국수보리밥	^촌 칼국수보리밥 법인 설립등기일		다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대표팩스번호
본점	개인사업자	2022.05.01	서 ē	해 성	1533 - 16	662	02)422 - 5181
	법인등록번호	- 사업기		다등록번호	59	91-22-0144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석촌칼국수보리밥" 라함)의 내용

1)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석촌 칼국수 보리밥	칼국수 전문점
상 호	석촌 칼국수 보리밥 000 점	
상표(서비스표)	석촌 칼국수 보리밥	출원번호 : 제4020230188384호
그 밖의 영업표지	석촌 칼국수 보리밥	광고, 홍보 등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_	_	_	_	_	_
2022년	_	_	_	_	_	_
2023년	_	_	_	417,503	_	_

※ 당사의 재무상황 확인은 별첨[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ачт	연 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영업표지	선 도	매출액	상 한	하 한	
석촌칼국수보리밥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 당사는 현재 가맹사업 개시 전 이므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01=	된 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임원	서 해 성	대 표	2022.05.01 ~ 현재	석촌칼국수보리밥 대표	경영총괄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저	임원=	누(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작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석촌칼국수보리밥 브랜드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석촌 칼국수 보리밥 (서비스표권)	상표사용 및 대가 수수	(출원일자) 2023.10.19.	(출원번호) 4020230188384	서 해 성	출원중

-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중 임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Ⅱ. 가맹본부의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사업 현황

1. 석촌칼국수보리밥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3년 07월 01일)

2. 석촌칼국수보리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 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석촌칼국수보리밥	석촌칼국수보리밥	니 헤 서	기대 시어 에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본점		시 에 경	76NH M6	33길 29, 1층(석촌동)

3. 석촌칼국수보리밥 업종

영업표지	업	종
8 급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석촌칼국수보리밥	한 식	칼국수, 보리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1.00	2	021.12.31		2	022.12.31	l.	2	023.12.31	l.
지역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	-	_	-	1	_	1
서울	_	_	-	-	_	_	1	_	1
부산	_	_	-	-	_	_	_	_	_
대구	_	_	-	-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	_	_	-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	_	_	_	_	_
세종	_	_	_	-	_	_	-	_	_
경기	_	_	-	-	_	_	-	_	_
강원	_	_	-	_	_	_	_	_	_
충북	_	_	-	_	_	_	_	_	_
충남	_	_	-	_	_	_	_	-	_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전북	_	-	_	_	_	-	_	_	-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	_	_	-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	_	_	_

5. 최근 3년간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_	_	_	_	_	_
2022년	_	_	_	-	-	-
2023년	_	_	_	_	_	_

6. 석촌칼국수보리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	맹점사업지	h의 연간 :	평균 매출	어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 간 평 균 매출액	면 적 3.3㎡당	상 한	면 적 3.3㎡당	하 한	면 적 3.3㎡당	비고
전체	_	_	_	_	_	_	_	_
서울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경기	_	_	_	_	_	-	_	_
강원	_	_	_	_	_	-	_	_
충북	_	_	_	_	_	-	_	_
충남	_	_	_	_	_	-	_	_
전북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	_	_
경북	_	_	_	_	_	-	_	_
경남	-	_	_	-	_	-	_	-
제주	_	_	_	_	_	_	_	_

8.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석촌칼국수보리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 관리를 위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석촌칼국수보리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十世	구긴	기건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_	_	_	_	_	_	
광고	_	-	_	-	-	_	
판촉	_	_	_	_	_	_	

※ 당사는 2023.12.31. 현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11. 가맹금 예치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91	02-418-4920

- ※ 가맹금 예치신청서는 별첨[4]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2) 가맹금 예치에 대한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즉시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가맹금을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후 은행이 제공하는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증서는 입금하신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예치 가맹금 지급 동의서)는 별첨[3]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석촌칼국수보리밥"은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 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차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8,800	계약체결 즉시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 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체결 즉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교육전 해약 시 위 약금과 상계 후 반 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현금)보증금	1,000	계약체결 즉시	계속 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 과 관련한 채무액, 채무불이행 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담보금	귀책사유와 상계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000
가맹비	8,800
교육비	2,200
(현금)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1]물품의 상세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 적 3.3㎡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57,000~58,000				66㎡ 기준
필수설비, 가구	미지정	10,000		업체와 협의	설치 전 계약취소	의, 탁자포함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II	40,000	2,000	업체와 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66㎡(20평)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2,000천 원 추가부담)
간판	"	3,000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3,000		납품 전 결제	상품 미 공급 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시행	1,000~2,000		_	_	개 점 행 사 비 , 소모품비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22만원(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촌 칼국수 보리밥 ___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가맹본부는 점포의 설치지역 및 장소에 대하여 시장특성, 고객 대상 의 분포 및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석촌칼국수보리밥"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자체조달의 경우 품질. 수량 등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백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5,000	총액의 10%	40%	50%
납부일	_	계약일	계약일+15일	가맹점 오픈 1일 전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광고 및 판촉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영업개시 3개월 이후부터 월 44만원	매 익월 5일	-	후불로 반환 되지 않음	자동이제 납부 시 매월 10만원 할인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직전분기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광고비 통지 서 도달후 7 일 이내	_	후불로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판촉비 통지 서 도달후 7 일 이내	_	후불로 반환 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 30% 이상 반 대시 미실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정기(수시)교육 : 실비	교육 실시 7 일 이전	_	교육 실시 후	필요시 수시 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 판 변경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금 외의 금액	업체와 협의 결정	-	_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 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 하여 당사와 협 의 결정
인테리어, 시 설, 각종 기 기의 교채보수 비용	"	가맹본부 분담금 외의 금액	업체와 협의 결정	-	-	교체·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 여 결정
POS 사용료	(비공개)	업체와 협의 결정	업체와 협의 결정	-	-	가맹본부와 협 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에 대해 년 15%	지 급 기 일 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단위 : 천원)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 2023년도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독기준은 별첨[2] 가맹점 관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영업지역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변경 요구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항
 O 가맹본부는 계약의 갱신(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시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제3항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의 반환은 최초의 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혐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의 반환은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중단하는 경우 조치에 관한사항	관련 계약조항
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 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금일천만원(₩10,000,000) 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제5항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귀하가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으나 사전에 당사에 통지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중단하는 경우 조치에 관한사항	관련 계약조항
0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당 금 일십만원(₩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위약벌로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
0	제①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37조 제3항
0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금액은 위 제①항의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 등 일체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며, 반드시정산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항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석촌칼국수보리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석촌칼국수보리밥"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과품질 및 성분이 동일하다는 서면입증을 통해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순번	≖ ₽ / r.lol /	공급	구분				
군인	품목(단위)	상한	하한	(공급업체)			
	해 당 사 항 없 음						

※ 2023년도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석촌칼국수보리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2023}년도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 액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 2023}년도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관 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 액	비고
			해 당 사 항 없	임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촌 칼국수 보리밥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1]물품의 상세 한 내역 3.판매하는 메뉴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 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세	1회 위반 : 구두 시정요구 2회 위반 : 2회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동종업체	별첨[1]물품의 상세한 내역 2.원, 부재료 내 역 참조	거래 상내방 별 로 기재된 제품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미성년자	주 류	은 판매할 수 없 음	시정요구 3회 위반 : 계약 해지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1]물품의 상세한	내역 3.판매하는 메뉴 참조	별도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합중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수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석촌칼국수보리밥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은 가맹점 개설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인구 및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후 도면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이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 통지 \rightarrow 가맹점 사업자 동의 \rightarrow 영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석촌칼국수보리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 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 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 ※ 당사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상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이 계약의 갱신 시(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에는 갱신가맹비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Α.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Ε.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항
1.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 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5.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 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 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사항	관련 계약조항
1.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 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가맹점사업자가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 변경을 한 경우	
7.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한 경우	
8.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9.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	
10.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 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 는 경우	
13.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 또는 정보공개서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1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 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사항	관련 계약조항
1.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시된 경우	
2.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대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5.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 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장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 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2항
6.가맹점사업자가제①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7.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 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 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신청(1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혐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 이 서면으로 상속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_	-	_

※상속 및 대리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석촌칼국수보리밥"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계약사 동종의 영	서에서 성한 영업과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가맹계약서 제38조 제3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 율	월 26일이상 영업	상권의 특성에 따라 가맹 본부와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촌 칼국수 보리밥 ___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나 영업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여부	비고
3명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직접 근무하도록 권장함	직계가족 대체 가능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감독기준은 별첨[2] 가맹점 관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

7 🖽	광고	부딩	상비율	분담 절차 비고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01.17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 매 출 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 매 출 액 비율 따라 산정		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 → Day 이벤트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전국 행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가맹본부의 등하게 분	과 가맹점 <i>/</i> 담	사업자가 균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 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항
O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5항
O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제4항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

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사항	관련 계약조항
0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 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 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1항
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
0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종료 이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3항
0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①항 내지 제③ 항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10,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항
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금일천만원(₩10,000,00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제5항
0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 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	제37조 제1항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__

	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 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당 금 일십만 원(₩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0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제4항
0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제3항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___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의 일정은 평균적인 가맹점 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가맹희망자 상담정보공개서 제공계약서 제공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별첨[6])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Ⅳ.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참조]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8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8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6(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5~4(2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2(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 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 - 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항
0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3조 제1항
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자율분쟁조정기 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제2항
0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 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제3항
0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제4항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용 및 절차	비고		
1.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인 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 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3.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4.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 5.비용부담 제외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현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 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 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부 (1533-166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 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점사업자 부담 (기맹금에 포함 된 통상의 경영 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 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가맹본부의 경영 사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 게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석촌칼국수보리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มฉ
신규 교육	5일(영업시간 기준)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수시) 교육	1일	실비	매년 필요시 통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 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8조 제①항에 따라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 예정일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3조제②항에 따라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있습니다.

계약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5조 제①항 제6호에 따라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석촌갈국수보리밥본점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15-4, 지하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835,00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물품의 상세한 내역

1. 필수설비 및 운영비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1.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기 설비 및 비품을 기본으로 갖춰야합니다. 2.공급가격은 현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원 · 부재료 내역
 - (1) 구입강제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한아름농산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2-4, Tel : 02-2275-2550

(2) 구입권장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1.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기 품목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공급가격은 현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판매하는 메뉴

NO	항 목	가 격(원)	비고
1	칼국수	9,000	
2	장칼국수	10,000	
3	포차칼국수	9,000	
4	분식떡만두국	10,000	
5	육개장칼국수	11,000	
6	석촌샤브칼국수	12,000	
7	비빔칼국수	9,000	
8	들기름칼국수	9,000	
9	열무보리비빔밥	9,000	
10	고기만두	7,000	
11	김치만두	7,000	
12	갈비만두	7,000	
13	칼국수세트	16,000	
14	포차칼국수세트	16,000	
15	장칼국수세트	17,000	
16	분식떡만두국세트	17,000	
17	육개장칼국수세트	18,000	
18	석촌샤브칼국수세트	19,000	
19	비빔칼국수세트	16,000	
20	들기름칼국수세트	16,000	
21	열무보리비빔밥세트	16,000	
22	겉절이	2,000	
23	석박지	2,000	
24	실비김치	5,000	

^{※1.}이 정보공개서에 정한 가격은 권장가격이며 내역이 없을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세부 운영규칙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권장가격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석촌 칼국수 보리밥

별첨[2]

가맹점 관리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석촌 칼국수 보리밥

별첨[3]

<u>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u>

(예치 가맹금 지급 동의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 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상호(가맹격						
신청인	성명(대표/		기위비구 .				
	주소(사무스	<u>-</u>	전화번호 :				
	I						
	상호(영업3	표지) : 석촌칼국수보리밥본점(석촌칼국수보리	밥)				
 가맹본부	성명(대표/	l): 서 해 성					
/ 기병분구	주소(사무스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9,	전화번호:				
		1층(석촌동)	1533 - 1662				
		-5(120)	I.				
예치가맹금	₩						
신청인의							
계좌							
	T						
가맹본부의		(비공개)					
계좌		<u> </u>					
「가맹사업	거래의 공기	·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7제2항에	마라 위외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	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치기: (지절		중소기업은행 귀하					
, . <u>-</u>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	·의 장은 예:	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	형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				
야 합니다	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기맹							
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6]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입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 석촌칼국수보리밥본점 대 표 : 서 해 성 (인)

전화번호 : 1533-1662

별첨[7]

"석촌칼국수보리밥"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가맹점사업자 용/ 가맹본부 용)

1.가맹본부명 : 석촌칼국수보리밥본점

2.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40000

3.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00.00

4.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5.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희망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일시	20 ا	크 월	일	시	수령장소	
본인자필 확인	(예시)) <i>본인은</i>	상기	정보공기	<i>배서(인근 가맹점</i>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정보공개서(별첨[6]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비밀과 사업에 관한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별첨[6]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포함)를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가 맹 본 부 상 호 : 석촌칼국수보리밥본점 대표 서 해 성 (인)

전화번호 : 1533-1662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29, 1층(석촌동)

_ 석촌 칼국수 보리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33-1662**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 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